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 
2023. 11. 27(월) 10:00

제247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 
**검 토 보 고 서**

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 
(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소관)



**복 지 건 설 위 원 회**  
전문위원 추병수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423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3. 11. 15.
- 라. 회부일자 : 2023. 11. 15.

## 2. 제안이유

「노인복지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, 경로당 지도·감독 결과에 따른 처분 사유 및 지원 근거조항을 추가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경로당 보조금 지원 조항 추가(안 제6조제1항제7호 신설)
- 나.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조항 신설(안 제6조의2 신설)
- 다. 경로당 지도·감독 결과에 따른 처분 사유 추가(안 제8조제2항 제3호 및 제4호 신설)
- 라. 모범경로당 선정 및 지원 조항 신설(안 제8조제3항 신설)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노인복지법」 제2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
- 나. 예산조치: 필요시 예산 조치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개정 이유

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「노인복지법」 제24조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, 경로당 지도·감독 사항을 추가 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

### 나. 주요 내용

- 1) 경로당 보조금 지원 조항 추가(안 제6조제1항제7호 신설)
  -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신설
- 2)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조항 신설(안 제6조의2 신설)
  -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: 「노인복지법」 제24조에 따라 위촉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
- 3) 경로당 지도·감독 결과에 따른 처분 사유 추가(안 제8조제2항 제3호 및 제4호 신설)
  - 경로당 등록 회원수가 20명 미만인 경우
  - 사행성, 영리행위, 회원 간 분쟁 등으로 경로당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
- 4) 모범경로당 선정 및 지원 조항 신설(안 제8조제3항 신설)

### 다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「노인복지법」 제24조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과 업무 등을 신설하기 위함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, 지역봉사지도원 제도의 운영상에 보다 다양한 출신의 노인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○ 경로당 지도감독은 공공의 책임성을 견지하기 위해 집행하는 적정한 행정 조치라고 볼 수 있음.

다만, 해당 부서는 경로당의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과 자치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할 것이며, 시설폐쇄가 가져올 지역사회에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행정의 과잉규제금지의 원칙 등을 고려한 신중한 권한 행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# 관계법령

## 노인복지법

[시행 2022. 3. 22.] [법률 제18609호, 2021. 12. 21., 일부개정]

제24조(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)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 <개정 2015. 1. 28.>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업무중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조언
  2. 도로의 교통정리, 주·정차단속의 보조, 자연보호 및 환경침해 행위단속의 보조와 청소년 선도
  3. 충효사상, 전통의례 등 전통문화의 전수교육
  4. 문화재의 보호 및 안내
- 4의2.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예방 교육
5.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

## 노인복지법 시행령

[시행 2023. 1. 1.] [대통령령 제32925호, 2022. 9. 27., 일부개정]

제18조(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등)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위촉한 지역봉사지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.

1.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
2. 질병·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려운 때
3. 기타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

③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“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”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. <개정 2008. 7. 24., 2018. 4. 24.>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
2.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에 대한 생활지도
3. 자원봉사활동 기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